##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17 발의연월일: 2022. 10. 17.

발 의 자:고용진·강병원·김정호

김주영 • 박재호 • 신정훈

이원욱 • 임오경 • 한병도

홍성국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물품을 보관, 제조, 판매 등을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특허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하므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

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의2제6항).

법률 제 호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6조의2제6항 중 "한 차례(다만, 중소기업등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고용을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세판매점 특허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2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특허 갱신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 ① ~ ⑤ (생 략)         | ①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 6                       |
| 자는 한 차례(다만, 중소기업등   | 고용을 유지하는 등 대통           |
| 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대통    | <u>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u> |
|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                         |
| 허를 갱신할 수 있다.        |                         |
| 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